

이사회내 위원회 연임 제한 예외공시

1. 공시 근거

- ①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」 제13조 및 제55조 제2항
- ② 당사 「지배구조 내부규범」 제20조 및 제38조

2. 이사회내 위원회 2년 초과 연임 사외이사

위원회명	성명	비고
이사회운영위원회	김우석	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		
리스크관리위원회	김성호, 김우석	
경영발전보상위원회		
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	김성호	

3. 2년 초과 연임 사유

- 당사의 사외이사 총수는 5인으로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사외이사에 대해 2년 초과 연임 제한시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부득이 상기 위원회의 사외이사에 한하여 2년 초과 연임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함

4. 이사회 개최일 및 장소 : 2015.3.27(금) /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. 끝.